

# 장성읍 이장회보

- 11월 중 1차 이·동장 회의 -

##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

###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및  
균형있는 영양 섭취



### 실내환경

실내는 따뜻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 외출 시

따뜻하게 옷 입기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 주의 사항

기저질환으로 복용하는 약이 한랭질환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어 의사와 상의하여 주의사항 숙지

# || 목 차 ||

## 총 무 팀 : 6건

1. 2026년 일반·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3
2.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협조 ..... 4
3. 11월 국악뮤지컬 「그대 먼 길 돌아 여기에」 홍보 ..... 4
4. 「장성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지원사업」 사진 전시회 .... 5
5. 11월 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 6
6. 이장 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 ..... 6

## 세 무 팀 : 1건

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 신청 ..... 9

## 주민복지팀 : 3건

1. 2025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 10
2. 2025년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 10
3. 2026년 경로당 급식지원 수요조사 ..... 11

## 맞춤형복지팀 : 2건

1.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12
2.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 12

## 산 업 팀 : 4건

1. 가을철 산불 예방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 13
2. 농작물재해보험 '양파' 등 가입기간 안내 ..... 13
3. 2025년 4분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14
4. 2026년 영농부산물 파쇄 희망농가 신청 접수 ..... 14

## 총 무 팀

1

# 2026년 일반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 개 요

- 신청기간 : 2025. 11. 10.(월) ~ 11. 28.(금) ※ 지원기간 : '26년 1월부터
- 내용 : 매월(1~12월) 지원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스포츠강좌이용권 : <https://svoucher.kspo.or.kr>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 <https://dvoucher.kspo.or.kr>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 지원내용

구 분	일반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u>5 ~ 18세 유·청소년</u> (2008. 1. 1. ~ 2021. 12. 31.)</li><li>• <u>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u></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u>5 ~ 69세 장애인</u> (1957. 1. 1. ~ 2021. 12. 31.)</li></ul>
지원금액	105,000원 / 월	110,000원 / 월

-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5. 12. 11.(목)

### □ 협조사항

- 기한 내 해당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박서연 ☎390-6803】

**2**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협조

### □ 개 요

○ 시 험 일 : 2025. 11. 13.(목) 08:40~17:45(전체 5교시)

○ 장 소 : 관내 1개소(**장성고등학교**)

### □ 협조사항

○ 시험일 시험장 주변 소음발생 최소화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주민 협조 안내 및 홍보

○ 특히 집중 소음통제 시간대 13:10~13:40 (영어 듣기평가 30분간) 주변 소음 최소화

【김수현 ☎390-6802】

**3**

## 11월 국악뮤지컬 「그대 먼 길 돌아 여기에」 홍보

### □ 개 요

○ 공연 일 : 2025. 11. 11.(화) 14시, 19시

○ 장 소 :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684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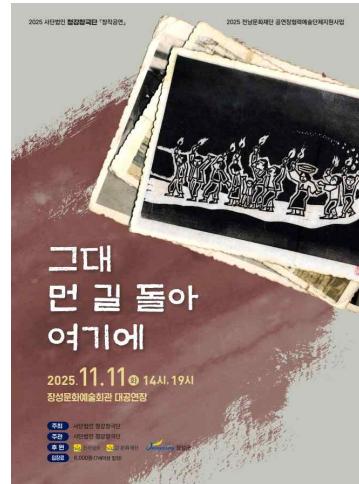
○ 관람연령 : 전체 관람가

○ 예 매 : 10. 28.(화) 오전 9시부터

– 인터넷 : 장성군청 누리집 문화예술회관 접속 예약

– 전화 : 잔여좌석 확인 후 예약

○ 관람료 : 6,000 원(장성군민, 65세이상 등 50% 할인)



###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김수현 ☎390-6802】

## 4

# 「장성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지원사업」 사진 전시회

## □ 개요

- 일시 : 2025. 11. 5. ~ 2026. 1. 4.(2개월)
- 전시주제 : 얼음과 불의 땅, 아이슬란드
  - 아이슬란드의 멋진 풍광사진을 전시함으로써 위로와 힐링 제공
- 장소 : 오피먼트 카페(전수련, 아인미술관 대표)
- 전시작품 : 20점
- 참여작가 : 7명(장성군 사진가협회 6, 사진전문여행사 대표 1)

## □ 참여작가

연번	구분	직위	성명	작품제목	비고
1	장성군 사진가 협회	회장	임재율	키르큐펠스 바다풍경 외 2	
2		부회장	나선주	우피요츠바튼스키 교회 외 2	
3		역대회장(고문)	한종안	옥사라 폭포 외 2	
4		역대회장(고문)	김수영	스카가피외르뒤르 풍경 외 2	
5		역대회장(고문)	조경원	글리우프리뷔 풍경 외 2	
6		회원	임현숙	스비나펠스요쿨 얼음 꽃 외 2	
7	사진전문여행사 대표	고광중	여우의 불 외 1		



※ 11월말 전시예정(문화가 꽂피다(카페) / 최영호 작가(미술협회회장, 서예))

## □ 협조사항

-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

【김수현 ☎390-6802】

**5**

## 11월 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안내

### □ 개 요

- 일 시 : 2025. 11. 20.(목) 16:00~
- 장 소 : 문회예술회관 소공연장
- 주 제 : 어른을 위한 여행의 기술(현대 한국인의 여행은 어떻게 달라졌나)
- 강 사 : 고재열(여행감독)
- 운영방법 : 현장(선착순) 및 온라인(장성군 공식 유튜브) 동시 진행

### □ 협조사항 : 관심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박서연 ☎390-6803】

**6**

## 이장 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

### □ 개 요

- 이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 특히,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    |   |
|----|---|
| 가.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br>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 나.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 다.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 □ 협조사항 : 이동장님들께서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준수

\* 【붙임 1】 참고

【박서연 ☎390-6803】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選舉權이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2010. 1. 25. >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2004. 3. 12.>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2010. 1. 25.>

④ 삭제<2010. 1. 2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 신청

□ 개 요

○ 개별공시지가 열람

- 기 간 : 2025. 10. 30. ~ 11. 28.(30일간)
- 열람장소 : 군 민원봉사과 또는 읍 행정복지센터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2$ 당 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 2025. 10. 30. ~ 11. 28.(3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군 민원봉사과 및 읍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협조사항 : 주민들이 기한 내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

【나해인 ☎390-6806】

## 주민복지팀

1

### 2025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 □ 개요

- 일시 : 2025. 11. 12.(수) 08:00 ~ 09:00
- 장소 : 황룡강정원 주차장(장성읍 기산리 26-1번지)
- 수거대상 : 영농 폐비닐류(하우스비닐, 로덴비닐, 하이덴비닐), 폐농약 용기류  
※ 비료포대, 곤포비닐은 무상 수거만 가능

#### □ 협조사항 : 집중수거 기간 내 배출 할 수 있도록 홍보

【박세연 ☎390-6829】

2

### 2025년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 □ 개요

- 사업기간 : 2025. 9. ~
- 지원대상 : 생후 24개월 이상~35개월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외·조부모
  -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
  - 부모 및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는 주민등록상 전남도 내 거주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4인 913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30만원 지원 (최대 1년 지원)
  -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신청방법 : 부모 가정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2025. 9. 22.(월) 이후

#### □ 협조사항 : 대상자에게 지원사업 적극 홍보

【김태규 ☎390-6813】

**□ 개 요**

- 사업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이 경로당 급식 지원 근무
  - 경로당 내 식재료 관리 및 조리 등
- 수요처 : 월 10식 이상 지원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한 경로당
- 제출기한 : 2025. 11. 14.(금) 까지

**□ 협조사항 :** 경로당 급식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마을 수요 제출

【김태규 ☎390-6813】

## 1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 개 요

- 신청대상 : 질병·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년 가구 / 19세 ~ 64세
- 필요서류 : 신분증, 진단서, 소견서 등
- 서비스내용
  - 기본서비스 :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 특화서비스 : 병원 동행, 식사 배달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
- ※ 타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등) 이용 시 지원 불가
- 본인부담금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기본서비스 : 면제(수급자, 차상위) ~ 66,000원
  - 특화서비스 : 11,400원(수급자, 차상위) ~ 228,000원

### □ 협조사항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박정서 ☎ 390-6828】

## 2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 □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발굴방법 : 이장, 생활관리사, 우리동네복지기동대, 고독사지킴이단,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과 함께 대상가구 방문 실태확인
- 발굴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차상위계층 중지 및 탈락가구
  -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 기타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지원내용
  - 위기사유에 따른 긴급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등 공적급여 지원
  - 생활불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민간자원연계 등 복지지원 안내

### □ 협조사항 : 위기가구 발생 시 읍사무소에 신고

【박정서 ☎ 390-6828】

1

## 가을철 산불 예방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 □ 개요

-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 2025. 11. 1.(토) ~ 2025. 12. 15.(월)
- 중점 홍보 사항
  - 산에 들어갈 때 화기 및 인화, 발화물질 소지 금지
  -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 산불조심 캠페인, 마을방송 등 산불예방 활동 협조

### □ 주요 금지사항 안내

-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 고추, 잣가지, 고춧대, 폐비닐 등 소각 금지
  -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인접지에서의 불법소각 주의
- 시설하우스 안전관리 철저
  - 온실 내외부 가연성 소재(폐비닐, 폐목재 등) 정리
  - 합선 위험 제거, 불필요한 전원차단 등 전기 사용 주의
  - 용접 등 시설 내 작업 지양
  - 온실 내 소화기 비치 및 진입로 장애물 등 제거 등 기타 화재 발생요인 차단
- 규제사항
  -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 □ 협조사항 : 【붙임 2】 안내문을 활용하여 마을방송 등 산불예방 홍보

【김영권 ☎390-6819】

2

## 농작물재해보험 '양파' 등 가입기간 안내

### □ 개요

- 10 ~ 11월 보험가입 가능 품목

가입품목	사업지역	가입기간	비고
양파 (수입포함)	전국	10. 20. ~ 11. 21.	
밀	전국	10. 20. ~ 12. 5.	
보리 (수입포함)	전국	10. 20. ~ 12. 5.	

### □ 협조사항 : 해당 품목 재배 농가 기간 내 신청하도록 홍보

【김제윤 ☎390-6822】

### 3

## 2025년 4분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 개요

- 신청기한 : 2025. 11. 28.(금)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30만원(최대 4천원/건당)
- 지원내용 : 관외 지역에 발송한 농산물 택배비 지원  
※ 2025. 1. 1. ~ 12. 5. 기간 내 택배발송한 농산물 지원(4분기 한시적 허용)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회원(직접 생산한 농산물 및 1차 농산가공품(즙), 꿀 등)
  - 친환경농산물 또는 GAP 인증농가(계란, 육류 등 제외)
- 신청방법 :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접수  
※ 지원 제외, 세부내용은 산업팀에 홍보물 비치되어 있으니 확인 바람
- 구비서류
  - (공통서류) 개별 신청 도장, 통장 사본 1부, 택배 발송내역 1부  
※ 택배발송내역 : 발송인(농업인) 이름, 발송일자, 배송지, 상품명(품목), 택배 수량, 운송장 번호, 선불여부, 접수요금 필히 포함
  - (추가서류) 친환경농산물 또는 GAP 인증서, 생산자 단체 회원 증빙서류  
※ 작목반 : 회원 명부, 농업법인 : 등기부등본, 회원 명부

### □ 협조사항 : 농가에 신청 홍보

【박지영 ☎390-6820】

### 4

## 2026년 영농부산물 파쇄 희망농가 신청 접수

### □ 개요

- 신청기간 : 2025. 11. 10.(월) ~ 2026. 1. 7.(수)
- 신청대상 : 영농부산물 파쇄를 희망하는 농업인
- 파쇄 신청품목 : 과수전정가지, 고추 · 참깨 · 들깨대 등 밭작물
  - 폐기물(지주대, 유인줄, 비닐, 등) 혼입 부산물 필지는 신청 제외
- 신청방법 :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접수
- 추진방법 :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등 위탁하여 파쇄지원단 운영
- 신청서류
  - 영농폐기물 파쇄 위탁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경작지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지대장 등)

### □ 협조사항 : 농가에 신청홍보

【박지영 ☎390-6820】

가을철 산불은 대부분 주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토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